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1
----------	-----

2024. 6. 2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4년 5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 라. 상정일자 : 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본 조례의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 (안 제5조)
- 서비스기업 지원 보조금 한도 확대 (안 제24조)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및 인구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 지원 체계 구축 (안 제27조의2~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서비스업의 지원 한도가 제조업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충북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차원의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 운영을 장려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 (타당성) 본 개정조례안은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 하고 인구증가 유도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며,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 보여짐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지원으로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금의 상향, 지원범위 가산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이전지원금 상향, 출산장려, 가족친화) 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역경제와 인구 문제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투자유치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경제통상국장, 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이전정착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호 중 “장애인기업”을 “장애인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을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기부 캠페인 참여 등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한”을 “정한 대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창업기업”이란 <u>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u> 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13.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란 <u>충청북도가 선정한 산업으로서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정보통신기술 또는 항공정비에 해당하는 산업</u> 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u>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투자유치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또는 균형건설국장</u>	1. <u>경제통상국장, 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u> -----

2. ~ 5. (생 략)

④ (생 략)

제24조(서비스업 지원) ① (생 략)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
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
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
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28조(지원비율 특례) 도지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서비스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0억원-----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사
업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이전정착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노동
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
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지원비율 특례) -----

에 따라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3.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신설>

제29조(지원한도)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조업: 100억원
2. 서비스업: 50억원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다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인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3.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

4.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기부 캠페인 참여 등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제29조(지원한도) -----

----- 100억원-----
-----.

<삭제>

<삭제>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5. (생략)

----- 정한 대상과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

-----.

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

2. ~ 5.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

2. 비용 발생 요인

-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최대 3년간, 총 10억원 이내)의 이전정착금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또는 저출생 극복 참여 기업이 투자 시 대해 2퍼센트 범위 내, 투자보조금 지원 가산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투자 시 10퍼센트 범위 내 투자보조금 지원 가산

3. 관련조문

- 안 제27조의2(이전정착금 지원)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안 제28조(지원비율 특례) 2.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증을 받은 기업인 경우 :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 안 제28조(지원비율 특례) 3. 투자기업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 안 제28조(지원비율 특례) 4.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기부 캠페인 참여 등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전정착금 연간 1개사(30명 이전, 연 1억8천만원 소요) 정도 지원
- 가족친화인증 투자기업 또는 저출생 극복 참여 투자기업 연간 2개사 정도 지원(기업당 10억 지원 시, 연간 총 4천만원 소요)
- 창업 또는 벤처 투자기업 연간 1개사 정도 지원(기업당 10억 지원 시, 연간 총 2천만원 소요)

나. 추계 결과 : '24년부터 향후 5년간 960,000천원 정도 소요되나 예산 내 충당 가능하여 별도로 추가비용 발생되지 않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기존 도내투자기업보조금 지원 사업 내 지원 기업 비율 조정을 통해 예산 내 충당(2024년도 예산 2,568,500천원)
- 추가 예산 반영 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568,500	2,568,500	2,568,500	2,568,500	2,568,500	12,842,500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2,568,500	2,568,500	2,568,500	2,568,500	2,568,500	12,842,500

6. 작성자 :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장 조병철